

#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**두루누리** 지원사업 안내

## 01 사업소개

- 사회보험은 질병, 장애, 노후생계, 실업, 사망 등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제도입니다.
-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**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“고용보험”과 “국민연금”**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## 02 지원대상

- 사업장 기준
  - ▶ **근로자수가 10명 미만**인 사업장 (법인은 법인등록단위, 개인은 사업자 등록번호 단위로 규모 판단)
  -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,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
  -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,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
  - 단, 공공기관은 제외
- 근로자 기준
  - ▶ **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**인 근로자
  -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합니다.

## 03 지원금액

- 고용보험 ·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(사업주 · 근로자 부담액 각각 50%씩 지원)

▶ 4대 사회보험료(월평균 보수 120만원일 때)(예시)

(단위:천원)

구분	합계		국민연금		고용보험		건강보험		산재보험
	사업주	근로자	사업주	근로자	사업주	근로자	사업주	근로자	사업주
월보험료	114	98	54	54	11	8	36	36	13
연보험료	1,368	1,176	648	648	132	96	432	432	156

★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연간 보험료 지원액 : 사업주(390,000원), 근로자(372,000원)

## 04 신청방법

- 전자신고 :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([www.4insure.or.kr](http://www.4insure.or.kr))
- 서면신고 : 보험료지원신청서 (위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-자료실-서식 자료실에서 다운)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우편, 방문, 팩스로 제출

## 05 신청문의

- 근로복지공단 1588-0075, 국민연금공단 · 고용노동부 (국번없이) 1355 · 1350